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12.22.> 중 “이 규칙은”을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으로 하고,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12.22.>에 제2조부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해가 2023년 이전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3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본관 및 공급관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22년 이전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23년으로 본다.

제4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3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본관 및 공급관은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12.22.>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12.22.>
<u>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u> <u>-----.</u>
<u><신 설></u>	<u>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u> <u>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 나목 및</u> <u>다목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u> <u>받아야 하는 해가 2023년 이전인 도</u> <u>시지역 외의 지역의 본관 또는 공급</u> <u>관은 제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u> <u>2024년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u> <u>공사와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시기</u> <u>를 정할 수 있다.</u>
	<u>제3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u> <u>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u> <u>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u> <u>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본관 및 공급</u> <u>관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u> <u>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u> <u>가 2022년 이전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u> <u>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u> <u>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u> <u>2023년으로 본다.</u>

제4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
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3년에 처
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본관 및 공급
관은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
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
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